

2022년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2022.6.18.)

• 해설 : 이승철

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해설

㉢ (×) 다원적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은 과정설.

☒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 비교

학설	실체설·규범설·적극설	과정설·소극설
공익개념	선험적(先驗的) 개념. 일원적·실체적·적극적 개념 전체효용극대화, 절대가치, 공유의 이익, 보편성	경험적(經驗的) 개념. 다원적·과정적·소극적 개념. 다수 이익 간 조정·타협의 산물, 적법절차의 준수
공익과 사익	공익은 사익과 본질적·질적 차이가 있음 사익을 초월한 공익의 존재(Σ사익 ≠ 공익) - 사익은 공익으로 전환 불가 - 정의, 도덕, 양심, 일반의사 등 실체적·도덕적 개념	공익은 사익과 상대적·양적 차이만 있음 사익이 고려되지 않는 공익은 없음 - 사익을 공익으로 전환 가능. 공익개념의 가변성. - 공익은 사익의 총합 또는 사익 간 타협·조정 결과
	공익과 사익을 명확하게 구분 사익보다 공익이 중요, 공익과 사익 간 갈등 없음	공익과 사익의 명확한 구분 곤란 공익과 사익은 갈등관계에 있음
사회체제	투입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	다원화된 선진국
사상	전체주의·집단주의(참여 무시)	현실주의, 개인주의(참여 중시), 다원주의
공익 결정자	행정인(소수 엘리트)의 적극적 역할 국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의 목민적(牧民的) 역할	행정인은 소극적 역할만 담당 국민주권주의에 의한 행정의 조정자 역할
이념	능률성·전문성 강조	민주성 강조
정책 과정	국방·외교정책과 관련	교육·복지정책과 관련
	국가주의(statism), 정책결정의 합리모형·엘리트론	정책결정의 점증모형·다원주의
관련학자	플라톤(Plato),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루소(J. Rousseau), 헤겔(G. Hegel), 칸트(I. Kant), 마르크스(K. Marx), 롤스(J. Rawls), 리프먼(W. Lippmann), 벤딕트(A. Benditt), 헬드(V. Held), 플래스맨(R. Flathman), 카시넬리(C. Cassinelli) 등	홉스(T. Hobbes), 흄(D. Hume), 벤담(J. Bentham), 베르그송(H. Bergson), 새뮤얼슨(P. Samuelson), 트루먼(D. Truman), 벤틀리(A. Bentley), 달(R. Dahl), 린드블롬(C. Lindblom), 소라우프(F. Sorauf), 리틀(D. Little), 애로(K. Arrow), 헤링(P. Herring), 슈버트(G. Schubert), 하몬(M. Harmon), 키(V. Key) 등
한계	① 단일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나 인간의 규범적 가치관에 따라 공익관이 달라지므로, 통일적 공익관 도출 곤란. ② 공익개념이 추상적이며 객관성·구체성 결여. ③ 이념적 경직성이 강해 공익 개념 해석에 융통성이 부족하며 국민 개개인의 주장이나 이익을 무시할 수 있음. ④ 소수관료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 공익 내용이 결정될 경우 비민주적 결정 초래(전체주의·권위주의 체제)	①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시민이나 잠재집단 및 약자의 이익 반영이 곤란함(활동적 소수의 이익만 반영). ② 도덕적·규범적 요인 경시, 국가이익이나 공동이익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음(집단이기주의의 우려) ③ 특수이익 간 경합·대립이 자동적으로 공익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기계적 관념. ④ 토의·협상·경쟁과정이 발달되지 못한 신생국에서는 적용 곤란. ⑤ 대립적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행정인의 가치판단 기능을 소홀히 여김. ⑥ 대립된 이익이 조정된 결과가 특수이익을 반영한 것이어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음.

답 ③

[관련기출]

1.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9급(상)

-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2. 공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정승진

- ① 공익의 실체설은 엘리트주의의 관점을 취하는 반면, 공익의 과정설은 다원주의의 관점을 취한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③ 공익의 과정설은 정부와 공무원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중시한다.
 ④ 플라톤(Platon)과 루소(Rousseau)는 공익을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본다.

3.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회9급

① 플라톤과 루소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한 결과가 공익이라는 입장을 강조한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정부와 공무원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중시한다.

③ 공익의 실체설은 공동체의 이익과 절대가치 등을 중시한다.

④ 민주적 조정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서 설명력이 더 높다.

⑤ 공익의 실체설은 엘리트주의의 관점을 취하는 반면, 공익의 과정설은 다원주의의 관점을 취한다.

답 1. ③ 2. ② 3. ①

2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론론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감독
- ② 대인관계
- ③ 보수
- ④ 성취감

해설

④ 성취감은 만족(동기)요인.

※ 허즈버그(Herzberg)의 불만요인과 만족요인 비교

불만요인(dissatisfier) = 위생요인(hygiene)	만족요인(satisfier) = 동기요인(motivator)
• 불만 유발 또는 불만 해소에 작용 • 생산성 향상과 직접적 관계 없음(필요조건에 불과). • 불만요인 제거시(충족시) 불만 없는 상태가 됨. • 불만요인 제거시(충족시)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음.	• 만족 또는 직무수행 동기유발에 작용 • 생산성 향상과 직접 관련됨(충분조건). • 만족요인 불충족시 만족 없는 상태가 됨. • 만족요인 불충족시 불만으로 연결되지 않음.
• 환경·직무수행상황 vs 조직구성원 • 직무 외적이고 물리적·환경적인 요인	• 직무 자체 vs 조직구성원 • 직무 내재적·심리적 요인(내적 보상·자아실현)
조직의 정책·관리·관행·규칙, 감독(리더십의 질), 근무환경·작업조건, 안전, 근무시간, 지위나 직위, 정년, 신분안정(직업적 안정), 복지시설, 보수, 대인관계(상사·동료·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	직무상 성취감(자아실현)·인정감, 직무자체·직무내용(보람 있고 도전적인 일), 개인의 성장(승진)·발전·자아개발,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 직무성과, 직무상 책임 증대, 칭찬

답 ④

[관련기출]

1. 허즈버그(F. Herzberg)가 주장한 만족요인·동기요인으로만 구성된 것은?

2007 국회8급

① 보수, 대인관계, 작업조건

② 성취감, 책임감, 직무내용

③ 보수, 직무내용, 작업조건

④ 승진, 직무내용, 대인관계

⑤ 성취감, 대인관계, 작업조건

2. 허즈버그(Herzberg)가 제시한 동기요인이 아닌 것은?

2016 행정사 / 2016 경찰간부

① 성취감

② 책임감

③ 보수

④ 안정감

⑤ 승진

3. F. Herzberg의 욕구충족2요인론에서 제시하는 동기요인인 것은?

2011 인천전환특채

① 직무환경

② 대인적 요인

③ 승진

④ 동료 간 관계

4. 허즈버그(F. Herzberg)가 주장하는 위생(hygiene)요인이 아닌 것은?

2004 서울9급(2)

① 자아개발

② 보수

③ 작업조건

④ 회사 및 조직의 정책

⑤ 상관과의 관계

5.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 2요인이론에서 위생요인이 아닌 것은?

2021 소방간부후보

① 작업조건

② 보수

③ 승진

④ 동료와의 관계

⑤ 직업의 안정

6. 허즈버그(F. Herzberg)가 제시한 위생요인이 아닌 것은?

2020 행정사

① 인정감

② 봉급

③ 대인관계

④ 근무조건

⑤ 조직정책

7. 허즈버그(H.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론에서 제시하는 동기요인(motivator) 내지 만족요인(satisfier)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0 국가9급

①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받는다.

② 상사로부터 직무성취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

③ 보다 많은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④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답 1. ② 2. ③ 3. ③ 4. ① 5. ③ 6. ① 7. ④

3 서번트(servant)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준다.

㉡ 보상과 처벌을 핵심 관리수단으로 한다.

㉢ 그린리프(R. Greenleaf)는 존중, 봉사, 정의, 정직, 공동체 윤리를 강조했다.

㉣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은 거래적(교착적) 리더십의 특징.

㉠, ㉢은 서번트 리더십과 관련됨. 서번트 리더십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앞에서 이끌어주고 봉사함으로써 구성원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헌신하는 리더십으로서 방향제시자, 의견조율자, 지원해 주는 조력자 등 세 가지 리더의 역할이 제시됨.

그린리프(R. Greenleaf)는 리더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하인(servant)으로 생각하고, 구성원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아 명령과 통제로 일관하는

자기중심적 리더가 아닌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개방적인 가치관을 지닌 리더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서번트 리더십을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종업원, 고객 및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린리프는 Greenleaf는 섬기는 자로서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10가지 특성과 요건으로서 다음을 들고 있다. ① 경청하고, ② 공감대를 가지고(empathy), ③ 고쳐나가고(healing), ④ 깨달으려 노력하여야 하며(awareness), ⑤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persuasion) 한다. 뿐만 아니라 ⑥ 자신의 능력 개발을 통해 위대한 꿈을 실현하라고 하는 개념(conceptualization)에 최선을 다하고, ⑦ 선견지명으로써(foresight), ⑧ 스튜어드십을 발휘하며(stewardship), ⑨ 사람을 성장하도록 하는데 몰입하고(commitment to growth of people), ⑩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도록(building community) 한다. 결국 **존중(respect), 봉사(service), 정의(justice), 정직(honesty)** 그리고 **공동체 윤리(community)** 등의 다섯 가지 원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답 ①

[관련기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가7급(인사·조직론)

- ① 리더와 구성원 간의 개별적인 교환관계에 관심을 기울인다.
- ② 조직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리더십이다.
- ③ 사람보다는 일의 결과와 과제를 우선한다.
- ④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지원한다.

답 ④

4 행정학의 주요 접근법, 학자,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행정생태론 -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 - 환경 요인 중시
- ② 후기행태주의 - 이스턴(D. Easton) -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 강조
- ③ 신공공관리론 - 리그스(F. Riggs) - 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
- ④ 뉴거버넌스론 - 로즈(R. Rhodes) - 정부·시장·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해설

- ① (×)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는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다. 행정생태론의 학자는 가우스(J. Gaus), 리그스(F. Riggs)이다.
- ② (×)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는 행태주의의 논리실증주의와 관련된다.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지향적 연구를 강조
 • **후기행태주의(탈행태주의)** : 1969년 이스턴(D. Easton)의 「정치학의 새로운 혁명」 - 후기행태주의(post-behavioralism)의 시작을 선언하고, 그 성격을 '적실성의 신조(credo of relevance)'와 '실행(action)'으로 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정책결정기능(가치판단) 중시. 사회과학자의 연구문제는 현실의 사회개혁과 관련되고, 시기적절한 연구가 필요하며 학계의 연구성과는 현실정책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학협동체제의 필요성을 강조. 행태주의의 폐기가 아닌 과학적 분석법을 수용하며 행태주의의 단점(현실적합성 결여)을 극복하려 했고, 과학적 방법의 배제가 아닌 현실에의 적용을 강조. 후기행태주의는 논리실증주의(가치배제·가치중립)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었고, 과학적 연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음. 오히려, 통계학과 컴퓨터 분석 등 계량적 분석방법에 뛰어난 능력을 급박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사용할 것을 주장.
- ③ (×) 리그스(F. Riggs)는 행정생태론의 학자

답 ④

[관련기출]

1. 행정이론과 학자 및 그 특성이 옳게 연결된 것은?

2021 경간부후보

- ① 행정행태론 - 마리니(Marini), 정치행정일원론, 민주성 강조
- ② 행정관리론 - 어윅(Urwick), 정치행정일원론, 형평성 강조
- ③ 비교행정론 - 리그스(Riggs), 정치행정일원론, 합법성 강조
- ④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Osborne), 정치행정일원론, 성과 강조

2.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과 그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행정사

- ① 뉴거버넌스론 - 로즈(R. Rhodes) - 민관협력 네트워크
- ② 생태론 - 리그스(F. W. Riggs) - 행정체제의 개방성
- ③ 공공선택론 - 오스트롬(V. Ostrom) - 정치경제학적 연구
- ④ 후기행태주의 - 이스턴(D. Easton) -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 강조
- ⑤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 - 기업가적 정부

3. 행정학 이론과 그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04 행정고시

- ① 행정행태론 - Simon, 정치·행정1원론, 민주성 강조
- ② 행정관리론 - Urwick, 정치·행정2원론, 능률성 강조
- ③ 발전행정론 - Weidner, 정치·행정2원론, 효과성 강조
- ④ 비교행정론 - Riggs, 정치·행정2원론, 형평성 강조
- ⑤ 신공공관리론 - Osborne, 정치·행정2원론, 합법성 강조

4. 다음 중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2018 경찰간부

- ① 신행정론 - 정치·행정일원론 - 사회적 형평성 강조
- ② 발전행정론 - 정치·행정이원론 - 정책 효율성 강조
- ③ 신공공관리론 - 정치·행정일원론 - 공공가치 강조
- ④ 행정행태론 - 정치·행정이원론 - 정책 효과성 강조

답 1. ④ 2. ④ 3. ② 4. ①

5 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민의 이동성
- ② 외부효과의 배제
- ③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 ④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해설	
③ (×) 지방정부는 최소한 한가지의 고정적 생산요소(fixed factor)를 가지며, 이로 인해 각 지방정부는 최적규모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 티부(C. Tiebout)의 발로 하는 투표 가설(voting with feet ; 이주에 의한 투표권 행사 ; 티부가설)	
의의	①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조세 간의 묶음을 주민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자신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로 진입·퇴장을 보장하면 지방정부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설(지방분권 옹호). 지방공공재의 시장배분적 과정 중시. ② 공공재는 분권적인 배분체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며 중앙정부에 의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새뮤얼슨(P. 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을 반박한 것.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공급방법이 지방분권임을 주장한 것이지 지방공공재의 최적 공급규모 결정 이론은 아님.
전제 조건	① 상이한 재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양한 자치단체가 존재하며 합리적·자립적으로 행동. 공공서비스 소비자이자 유권자인 시민은 지방정부를 선택. ② 지역 간 자유로운 이동가능성(이주비용이 거의 없음) : 지역 간 이동에 필요한 거래비용(이사비용 등) 등 제약 없이 지역 간 이동이 가능. 불완전한 이동이 아닌 '완전한 이동성'을 전제(집을 팔고 이주). ③ 모든 주민은 배당수입(dividend)에 의존하여 생계 유지. 취업기회 차이나 소득획득상의 지역적 한계성이 없음. ⇨ 거주지 선정시 고용기회는 영향을 주지 못하며 단지 지방정부 재정프로그램만을 기준으로 거주지 선택. ④ 완전 정보 : 시민들은 모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재정프로그램(지방정부의 공공재, 지방세, 세입·세출 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짐. ⑤ 외부효과 없음 : 해당 지역의 프로그램의 이익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만 돌아가며 이웃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익(경제) 또는 불이익(불경제)을 주지 말아야 한다(외부효과가 존재한다면 지역 간 이동이 불필요해 질 수도 있기 때문). ⑥ 지방공공재 생산시 소요되는 단위당 평균비용은 일정(규모수익이 불변인 생산기술로 규모의 경제가 없어야 함) : 지방정부의 규모의 차이에 따른 지방공공재 대량생산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⑦ 지방정부의 재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property tax)로 충당되며 국고보조금 등은 없다고 가정. ⑧ 지방정부는 최소한 한가지의 고정적 생산요소(fixed factor)를 가짐 ⇨ 이로 인해 각 지방정부는 최적규모를 추구. ⑨ 최적규모의 추구 : 최적규모 보다 적은 경우 평균비용 감소를 위해 주민을 더 유입시키려 하고, 최적규모보다 큰 경우 주민을 감소시키려 하며, 최적규모인 경우 현행 인구를 유지하려 함(최적규모란 최저평균비용으로 지방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규모).
결론	① 지방정부가 독자적 조세징수와 지방공공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지방분권시 효율적 자원배분(Pareto 효율) 달성. ②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주민의 선호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며, 시장처럼 주민들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큰 이득을 얻는 프로그램을 찾아 지방정부를 선택하게 하면 비슷한 선호와 소득을 가진 주민이 모여 살게 되고 지방공공재 규모가 적정수준이 됨.
한계	① 형평성 저해 가능 : '지역 내 동질성'은 높아지지만 지역 간 빈부격차가 심해져 '지역 간 이질성'은 더욱 심해짐(효율성을 위해 형평성을 희생함). ② 전제조건외 비현실성 : 현실의 직장·문화시설·지역에 대한 감정적 정서·지가·입지조건 및 관련 이주비용, 불완전정보, 외부효과 등을 무시(지역 간에는 현실적으로 명백히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 효과가 존재하며, 집을 팔지 않고 강남으로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 완전한 이동이 못되어 강남지역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비용부담지역과 이득을 보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게 됨. 즉,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면 응익주의를 저해).

답 ③

[관련기출] 티부(C. M. Tiebout) 모형에서 제시한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보의 불완전성 ② 다수의 지방정부 ③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④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2019 서울9급(1)

답 ①

6 관료제 병리현상과 그 특징을 짚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할거주의 - 조정과 협조 곤란
- ② 형식주의 - 번거로운 문서 처리
- ③ 피터(Peter)의 원리 -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 ④ 전문화로 인한 무능 -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강조로 타 분야에 대한 이해력 부족

해설	
① (○) 할거주의(sectionalism) : 관료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만을 종적·배타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조직에 대한 배려가 없어, 결과적으로 횡적·수평적 조정·협조가 곤란함.	
② (○) 형식주의·번문옥례(繁文縟禮 ; Red Tape), 규칙·선례에 집착 : 관료제의 문서주의와 규칙 중시는 실제적인 행정의 내용보다는 복잡한 서류절차와 날인절차 등 겉치레를 중시하는 형식주의를 초래(문서다작주의[文書多作主義], 다인장주의[多印章主義]). Red Tape은 형식·의례·관례·규칙·절차에 집착하는 현상을 포괄하는 의미.	
③ (×) •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 무능력자의 승진 : 관료제의 규모가 커지면 승진의 기회가 확대되고, 무능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조직의 능률이 저하됨. 계층제적 관료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한다는 피터의 원리가 작용. • 관료제국주의(empire building), 무리한 세력확장 : 관료제는 자기보존 및 세력 확장을 도모하므로, 업무량과 상관없이 기구·인력을 증대시킴.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배제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권위적인 관료는 개인적 권력과 이익 신장을 위해 공식적 권한을 사용하며 권력투쟁을 함.	
④ (○) 전문화로 인한 무능,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 한 가지 분야의 지식·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은 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새로운 조건이나 변동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이 촉진됨.	

답 ③

[관련기출]	
1.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옥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2017 국가9급(상)

2.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 지방7급

- ① 동조과잉과 형식주의로 인해 '전문화로 인한 무능' 현상이 발생한다.
- ②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 ③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할거주의가 나타난다.
- ④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번문욕례(red tape) 현상이 나타난다.

답 1. ④ 2. ③

7

정책집행 연구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엘모어(Elmore)의 후방향적 집행연구
- ㉡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의 집행과정 모형
- ㉢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 ㉣ 반 미터(Van Meter)와 반 호른(Van Horn)의 집행연구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정책집행 연구

하향적 집행론	①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언(D. Mazmanian)의 정책집행의 성공 요인(효과적 정책집행을 위한 이상적 조건 제시) ② 미터와 호른(Van Meter & Van Horn)의 집행연구 ③ 바르다흐(E. Bardach)의 집행게임(Implementation Game)
상향적 집행론	① 버먼(P. Berman)의 적응적 집행론[상황론적 집행] : 정형적 집행을 구분하고 개별적인 집행환경에 부합하는 적응적 집행이 필요함을 강조 ② 엘모어(R. Elmore)의 후방향적 접근 : 전방향적 접근(forward mapping)과 후방향적 접근(backward mapping)으로 구분하고 집행현장의 여건이 성공적 집행을 요건이 된다고 보고 상향식 접근인 후방향적 접근을 강조. ③ 히언(B. Hjern)과 헐(C. Hull)의 집행구조 연구
통합적 접근법	① 사바티어(P. Sabatier) 정책옹호[지지]연합모형 ② 엘모어(R. Elmore)의 통합모형(전방향적 집행과 후방향적 집행으로 구분하고 상향적 집행인 후방향적 집행의 유용성을 주장하다가 이후에 양 접근이 상호가역적 논리(reversible logic)로 적절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 ③ 매틀랜드(R. Matland)의 통합모형 ④ 윈터(S. Winter)의 정책결정-정책집행 연계모형

답 ①

8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 ② 정책승계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을 대체 혹은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하는 것이다.
- ③ 정책유지는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 ④ 정책종결은 다른 정책으로의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해설

- ① (×) 정책혁신은 정부가 과거에 관여하지 않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 및 정책수단(조직·예산·법률)을 수립하는 것이다(무[無]에서 유[有] 창조)

답 ①

[관련기출]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7급

-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 ②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 ③ 과속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linear) 승계에 해당한다.
- ④ 정책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답 ①

정책변동의 유형(변동의 내용 기준) - 호그우드(B. Hogwood)와 피터스(B. Peters)

정책혁신 (innovation)	정부가 과거에 관여하지 않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결정.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 및 정책수단(조직·예산) 수립(무[無]에서 유[有] 창조) 예 인터넷의 이용 활성화에 따른 사이버 범죄 수사대 신설			
정책유지 (maintenance)	① 기존 정책의 기본 성격 유지. 기존 정책의 내용·담당조직·예산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며 약간씩만 수정·변경. ② 기존 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산출이나 정책수단의 일부나 집행절차를 조정 하는 수준. 예 정책수혜 대상자의 수나 수혜액, 수혜자의 자격 등 조정 ③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적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정책결정 후에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현재의 특수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정책승계 (succession)	① 기존 정책의 목표는 유지하되 의도적으로 정책의 기본 성격을 바꿈.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정책내용, 담당조직, 예산항목 등을 대폭 수정·변경하거나 이들을 모두 없애고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 신·구 정책 간 상당한 연계성·중첩성 있으며 기존 정책을 수정·조정하는 것임. ② 정책변동 중 가장 중요한 유형으로 정책혁신이나 정책종결보다 빈도가 높음 ※ 정책승계의 빈도가 높은 이유 : 정책종결보다 저항이 적고, 정책의 결함이나 부적응 문제는 부분적인 경우가 많음, 정책혁신보다 자원소요가 적음, 대부분의 문제영역에서 정책들이 나와 있어 정책공간이 과밀화되어 있음. ③ 정책목표는 변화하지 않는 점은 정책유지와 유사하나 정책승계는 정책수단인 사업, 담당조직, 예산항목 등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는 다름			
	정책유지	목표 유지	적응적(adaptive) 변화	소폭 변경(산출이나 정책수단 일부 조정) 예 청년인턴제 대상 기업 및 지원금액 조정
	정책승계	예 청년실업해결	의도적(purposive) 변경	대폭 변경(수단 자체의 변경 포함) 예 청년인턴제를 폐지하고 청년실업자 구직촉진수당제로 전환
	☑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 하는 것은 정책유지이다.(x)			
	선형승계[정책대체]	정책목표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정책으로 대체(부분대체, 정책환원, 정책재도입 등).		
정책 통합	두 개 이상의 기존 정책을 하나로 통합.			
정책 분할	하나의 정책을 두 개 이상으로 분리.			
부분 종결	정책 일부는 유지하고, 일부는 완전 폐지하여 축소된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 나타남.			
비선형승계	정책유지, 대체, 종결, 추가 등이 세 개 이상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복합적 승계).			
우발적 승계	예기치 않았던 원인 또는 우연한 계기로 인하여 발생한 정책승계. 예 어떤 새로운 정책의 채택에 수반하는 부수적 효과 때문에 기존 정책의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			
정책종결 (termination)	① 정부가 개입을 전면 중단하고 의도적으로 기존 정책 및 정책 관련 조직·예산·법령을 폐지하고, 다른 정책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 감축관리의 일환으로도 가능. ② 바르다흐(E. Bardach)는 소요시간 관점에서 ㉠ 폭발형(일시에 충격적으로 폐지, 가장 일반적인 방법), ㉡ 점감형(서서히 소멸), ㉢ 혼합형(서서히 감소시키다가 사회적 충격이 적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일시에 종결)으로 구분			

새로운 문제 등장

정책혁신

문제의 지속

정책유지

문제의 변질

정책승계

문제의 소멸

정책종결

구분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문제상황	새로운 문제 등장	문제의 지속	문제의 변질	문제의 소멸
변동과정	의도적(purposive)	적응적(adaptive)	의도적	의도적
변동정도	무에서 유를 창조	소폭 변경	대폭 변경 또는 종결 후 대체	종결된 후 대체는 없음
담당조직	새로운 조직 탄생	의도적인 조직변동 없음(관리상의 결과론적 변동)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직이 변동됨	기존 조직 폐지
해당법률	새로운 법률 제정	일반적으로 법률개정 불필요	기존 법률 일부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 필요	관련 법률 폐지
정부예산	새로운 정부지출	상황에 따른 예산 책정(예산과목 변동 없음), 예산 증액, 예비비 사용.	기존 예산이 있으나 이체 등이 필요	원칙적으로 예산 소멸

9 조직문화의 경쟁가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계 문화는 응집성을 강조한다.
- ② 혁신지향 문화는 창의성을 강조한다.
- ③ 과업지향 문화는 생산성을 강조한다.
- ④ 관계지향 문화는 사기 유지를 강조한다.

해설

① (×) 응집성을 강조하는 것은 관계지향문화이다. 이는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경쟁적 가치접근법에 의할 경우 인간관계모형과 관련된다. 위계문화는 조직효과성에 대한 내부과정접근법과 관련되며 안정·통제·명령·규칙 등을 강조한다.

☒ 조직문화의 경쟁적 가치접근(Competing Value Model) - 퀸과 김벌리(E. Quinn & R. Kimberly)

신축성[유연성·변화] - 분권화, 차별화(다양성)

내부지향 (통합·단합)	관계지향 문화 / 집단문화(clan culture)·합의문화 (인간관계모형) clan(공동체, 가족)	혁신지향 문화 / 발전문화(development culture) (개방체계 모형) Adhocracy	외부지향 (경쟁)
	위계지향 문화 / 위계문화(hierarchy culture) (내부과정 모형) hierarchy(계층제)	과업지향 문화 / 합리문화(rational culture) (합리적 목표 모형) market(시장)	

통제[질서·안정] - 집권화, 집중화(통합)

- 수직 축(구조) : 유연성 지향은 분권화의 다양성(차별화)을 강조, 통제지향은 집권화와 통합(집중화)을 강조. 조직의 유기적 특성과 기계적 특성의 구분을 뜻함.
- 수평 축(초점) : 내부지향은 조직 유지를 위한 조정·통합 강조. 외부지향은 조직 환경에 대한 적응, 경쟁, 상호관계 강조
- 조직은 네가지 조직문화 유형을 모두 가질 수 있으며 그 강도는 차이가 있음.

구분	관계지향문화(공동체형 문화)	혁신지향문화(유기체형 문화)	위계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시장형 문화)
	Clan(집단) 집단문화(clan)·합의문화(consensual)	Adhocracy 발전문화(development)	hierarchy(계층제) 위계문화(hierarchy culture)	Market(시장) 합리문화(rational culture)
	인간관계모형	개방체제모형	내부과정모형	합리목표모형
특징	유연성·변화 / 내부지향	유연성·변화 / 외부지향	안정성·통제 / 내부지향	안정성·통제 / 외부지향
핵심속성	협력, 가족적 인간관계, 응집성	창의성, 기업가정신	통제, 명령, 규칙, 규제, 능력	경쟁, 목표달성, 시장점유율
리더	후견인(mentor), 촉진자, teambuilder	innovator, visionary, entrepreneur	monitor, coordinator, organizer	hard-driver, 경쟁자, 생산자
관리지향	의사소통, 인간적 배려, 헌신	창의·혁신, 자율성, 지속적 변화	통제·조정, 능력성, 일관성·통합성	경쟁력, 생산성, 고객초점
조직형태	공동체, 가족	adhocracy	계층제, 관료제	시장조직

㉠ **관계지향 문화** : 구성원의 신뢰, 팀워크를 통한 참여·충성·사기 등 중시. 조직 내 가족적 인간관계의 유지에 역점. 조직구성원의 단결, 협동, 공유가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등 중시. 개인의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조직구성원에 대한 인간적 배려와 가족적 분위기 형성

㉡ **혁신지향 문화** : 조직의 변화와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외부환경에의 적응능력에 중점. 외부환경에 대한 변화지향성과 신축적 대응성을 기반으로 조직구성원의 도전의식, 모험성, 창의성, 혁신성, 자원획득 등을 중시하며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 조직구성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율성과 자유 재량권 부여.

㉢ **위계지향 문화** : 공식적 명령과 규칙, 집권적 통제와 안정지향성을 강조하는 관료제의 가치와 규범을 반영. 위계질서에 의한 명령과 통제, 업무 처리 시 규칙과 법 준수, 관행, 안정, 문서와 형식, 보고와 정보관리, 명확한 책임소재 등을 강조하는 관료적 문화. 계층제적인 강력한 감독체계와 예측된 규범과 절차를 속성으로 하므로 안정성과 통제에 대한 필요성과 조직 내부적 유지와 통합에 초점.

㉣ **과업지향 문화** : 조직의 성과목표 달성과 과업 수행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강조. 목표달성, 계획, 능력성, 성과 보상의 가치를 강조. 외부지향성 관점에서 경쟁을, 성과통제의 관점에서 목표달성을 강조, 외부관계자와의 거래에 강조점을 두며, 경쟁력과 생산성이 핵심가치.

☒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경쟁적 가치접근법(경합가치접근 ; Competing Values Approach) - 퀸과 로르보(R. Quinn & J. Rohrbaugh)

- 경쟁적 가치의 세 가지 차원

㉠ 조직의 초점(focus) : **인간/내부**(people/internal ; 구성원의 복지·발전)과 **조직/외부**(organization/external ; 조직의 발전) 차원

㉡ 조직의 구조(preference for structure) : **유연성**(flexibility ; 변화·적응·혁신)과 **통제**(control ; 안정성·질서·예측가능성) 차원

㉢ 수단(means ; 내부과정·장기적 기준)과 **목적**(ends ; 최종결과와 단기적 기준) 차원

- 조직 효과성의 네 가지 모형과 조직효과성 평가기준

구분	인간·과정 중시(구성원의 복지·발전)	조직·구조 중시(조직의 생산성, 조직 자체의 발전)
유연성(변화·적응·혁신) 중시	인간관계모형	개방체제모형
통제(안정성·질서·예측가능성) 중시	내부과정모형	합리목표모형

구조(유통성 vs 통제)

초점 (focus) 내부vs외부	내부 (조직구성원의 복지·발전)	유통성[유연성] (flexibility)		외부 (조직 자체의 발전)
		인간관계모형(Human Relations Model) • 목표 : 인적 자원 개발, 능력발휘, 구성원 만족 • 수단 : 응집력, 사기	개방체제모형(Open Systems Model) • 목표 : 성장, 자원확보, 환경 적응 • 수단 : 유통성, 용이성, 외부의 평가(support)	
		내부과정모형(Internal Process Model) • 목표 : 안정·균형, 통제·감독 • 수단 : 정보관리, 의사소통	합리목표모형(Rational Goal Model) • 목표 : 생산성, 능력성, 수익 • 수단 : 기획, 목표설정, 합리적 통제	
통제(control)				

- 수평 축 ⇨ 초점(organizational focus) : ㉠ 내부(조직구성원의 복지·발전), ㉡ 외부(조직자체의 발전)
- 수직 축 ⇨ 조직구조(organizational preference for structure) : ㉠ 통제·안정성(control·stability), ㉡ 유통성[유연성]·변화(flexibility·change)

답 ①

2022년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7

[관련기출]

1.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경제9급

① 개방형 문화는 조직 성장과 자원 획득을 강조하는 반면, 내부과정형 문화는 정보관리와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② 인간관계형 문화는 유연성과 내부 지향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합리목표형 문화는 통제와 외부 지향을 특징으로 한다.

③ 조직의 지향점과 구조를 조직 효과의 핵심으로 본다.

④ 조직은 상호 경쟁적인 조직문화 유형을 모두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켄(Quinn)의 경쟁적 가치의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 ㉠에 해당하는 것은?

2020 소방간부

유연성

내부지향

외부지향

질서

㉠

① 생산중심 문화 ② 인적 자원 문화 ③ 개방체제 문화 ④ 위계질서 문화 ⑤ 관계지향 문화

답 1. ④ 2. ①

10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퇴직연금 지급률을 1.7 %로 단계적 인하
- ②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 ③ 퇴직연금 기여율을 기준소득월액의 9 %로 단계적 인상
- ④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해설

④ (×) 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었다. 2015년 개정에서는 퇴직연금지급률의 단계적 인하가 있었다.

■ 퇴직연금지급률 : 전체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1.7%(2035년까지 단계적 인하)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 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

※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2015.6.22. 공포, 2016.1.1부터 단계적 시행)

저부담 - 고급여의 연금구조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이 누적적으로 심화되어 정부의 부담금과 공무원의 기여금 인상, 연금급여액 인하, 연금지급의 개시연령 연장 등의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혁이 이루어짐.

구분	기존	개편 후	비고
공무원 기여율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7%	기준소득월액의 9%	2016년부터 5년간 단계적 인상
정부 부담률 인상	보수예산의 7%	보수예산의 9%	
연금 지급률 인하	전체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1.9%	전체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1.7%	2035년까지 단계적 인하
연금산정시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	•2009년 이전 임용 : 60세 •2010년 이후 임용 : 65세	원칙적으로 임용시기 구분 없이 65세	퇴직연도기준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 2033년부터는 65세
기여금 납부기간과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 상한 연장	33년	36년	재직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재직기간별 33~35년으로 함.
연금수령조건 완화	가입기간 20년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완화
기준수급자연금액 동결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	2016년부터 5년간 동결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2009년 이전 : 70% •2010년 이후 : 60%	60%	전·현직 모두 60% 적용(개정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사유 발생자부터)
공무상 유족 연금 및 유족보상금 지급요건 개선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	

답 ④

11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르면?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레저세 ㉤ 재산세 ㉥ 취득세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과세주체별 지방세의 종류

과세주체		보통세(9개)		목적세(2개)
광역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주1)} ,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2)} 취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도 세	등록면허세		
기초자치단체	시·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3)}	×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 주1) 광역시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을 자치구세로 함. 주민세 개인분만 광역시세.
 주2)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21% x)를 재원으로 함. 시·군·자치구에 납입·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은 시·군·자치구세로 함.
 주3) 특별시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을 특별시세로 함. 주택·건축물·토지 재산세는 특별시와 공동과세.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도세 항목을 광역시세로 함(예 등록면허세). / 특별자치도세와 세종특별자치시세에는 전체 지방세가 포함됨.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함.

답 ③

12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회계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회계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 ②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 ③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 ④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해설

- ① (○) 국가회계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지방자치단체회계는 e-호조 시스템(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 ② (×) • 정부회계의 구분 - 예산회계와 정부회계(2원적 운영)

예산회계	단식부기·현금주의에 의한 수취결산 자료로서 세입세출결산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금집행의 계획과 통제가 주목적.
재무회계	경제적 자원을 측정하는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등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차대조표(재정상태표 - 자산·부채·순자산)와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 - 수익·비용) 등 재무제표로 나타나며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의 파악이 주목적.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 적용. 재무운영의 결과와 회계주체의 재정상태를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판단자료를 제공.

- ③ (○) 미수수익은 채권으로서 자산, 미지급금은 채무로서 부채로 표시.
- ④ (○) 재무제표 작성은 복식부기·발생주의가 적용된다. 복식부기의 작성방식은 계정식(차변·대변 구분)과 보고식(차변·대변 구분 없이 순서대로 아래로 나열)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작성방식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별표 1호~5호에 따라 계정식이 아니라 대차 구분 없이 자산·부채·순자산 또는 비용·수익·재정운영결과 등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보고식으로 작성한다.

* 아래 내용 중 상단은 계정식(차변·대변 구분), 하단은 보고식(순서대로 아래로 나열)

재정상태표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stock)

차변	대변
자산	부채
	순자산(자본)

순자산변동표

일정기간 동안의 순자산 변동내역(flow)

차변	대변
순자산 감소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운영차액 : 순수익)
	순자산 증가
기말 순자산	

재정운영표

일정기간 동안의 재정 성과(flow)

차변	대변
비용(원가)	수익
재정운영결과 (운영차액 : 순수익)	

재정상태표

자산	500조
부채	100조
순자산	400조

순자산변동표

기초순자산	300조
재정운영결과	100조
순자산 증가	0
순자산 감소	0
기말순자산	400조

재정운영표

비용	200조
수익	300조
재정운영결과	100조

*우리나라는 보고식으로 작성

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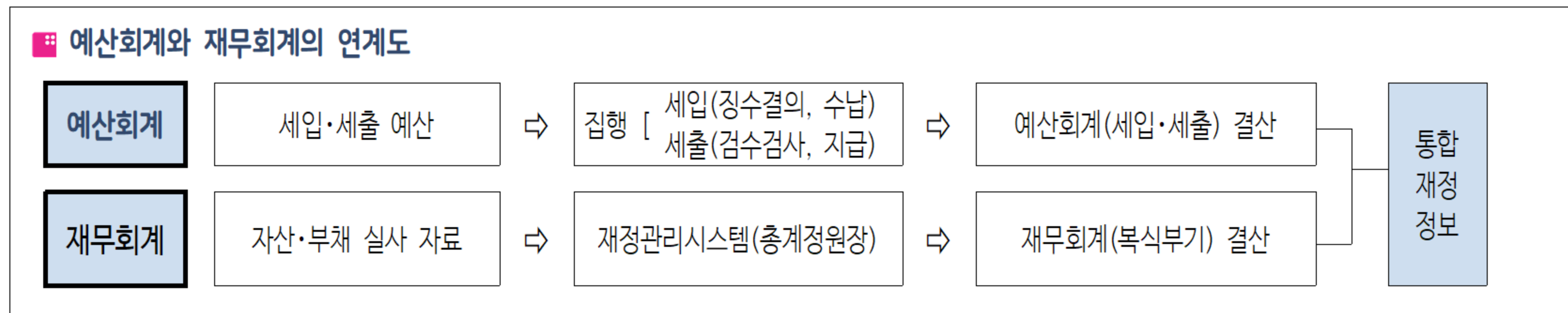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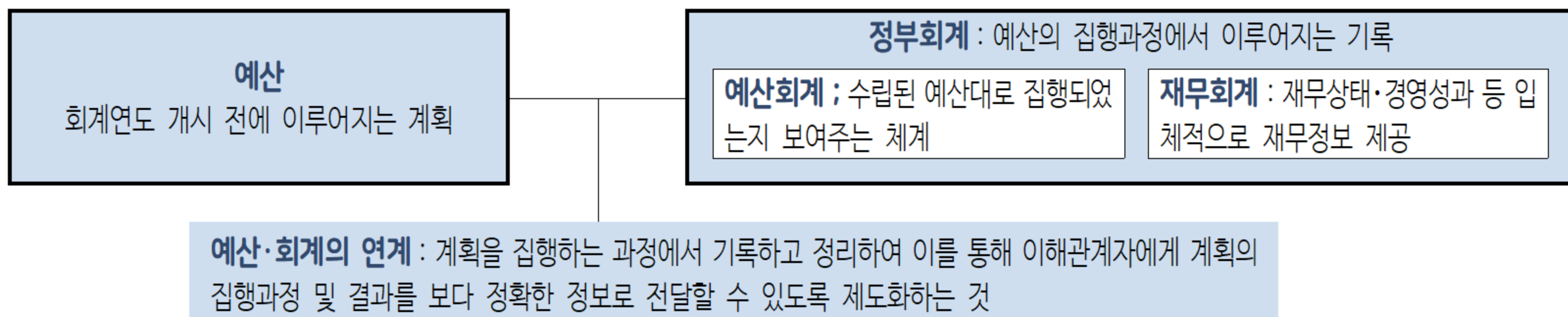
정부회계의 구분 - 예산회계와 정부회계

1. 정부회계의 개념 : 정부조직의 재정활동과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기록·요약·평가·해석하는 기술임과 동시에 정부조직의 내·외적 관련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기술적·실무적 측면과 과학적·이론적 측면을 동시에 지님).
 - 기업회계의 목적은 이윤의 측정·보고이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의 특성상 정부회계의 목적은 예산과 비교한 자금의 흐름을 보여줌.
2. 정부회계의 구분 - 예산회계와 정부회계(2원적 운영)

예산회계	단식부기·현금주의에 의한 수취결산 자료로서 세입세출결산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금집행의 계획과 통제가 주목적.
재무회계	경제적 자원을 측정하는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등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차대조표(재정상태표 - 자산·부채·순자산)와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 - 수익·비용) 등 재무제표로 나타나며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의 파악이 주목적.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 적용. 재무운영의 결과와 회계주체의 재정상태를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판단자료를 제공.

구 분	예산회계	재무회계
의의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 보고(자산·부채, 수익·비용 등)
회계과목	수입, 지출	자산·부채·자본(순자산), 수익·비용
회계방식	현금주의·단식부기(공기업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발생주의·복식부기
결산서	세입예산결산서, 세출예산결산서	대차대조표(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
회계목적	자금집행 계획 및 통제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 파악
가치지향	행정 내부조직 중심 - 예산집행 통제, 법규 준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투명한 공개, 효율적 집행
보고방식	회계단위별 분리 보고	회계단위 간 연계·통합 보고
자기검증기능	없음	회계오류의 자동 검증(대차평균)

- ① **예산과 회계의 연계** : 예산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 회계는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서 정보이용자가 적절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측정·전달하는 과정이므로 양자는 서로 연계되어야 함.
- ② **정부회계의 이원적 운영(Dual System)** : 우리나라 정부회계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병행 활용. 기존 예산회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여 재정의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며 통합재정정보를 제공.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비교

구분	현금주의(cash basis ; 형식주의)	발생주의(accrual basis ; 실질주의, 채권채무주의)
인식기준	현금의 수불(수취·지불) 사실을 기준으로 인식 현금 유입시 수입으로 인식, 현금 유출시 지출로 인식 수입은 현금수납이 있을 때 기록 지출은 현금지급 및 수표발행이 있을 때 기록 자산·부채 변동은 비망(備忘)기록으로 관리(공식적 표기 없음)	현금 유·출입과 관계없이 거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 수익의 획득과 비용(지출)의 발생(자산 변동·증감)시점 기준 현금으로 회수될 채권 발생시(징수결정시점) 수익으로 인식 현금을 지불할 채무 발생시(채무확정시점) 비용으로 인식 자산·부채 평가(주관적), 자산·부채 변동의 공식적 표기
인식내용	미지급비용·미수수익(未收收益)은 인식 안 됨 선급비용(先給費用)은 비용으로 선수수익(先受收益)은 수익으로 인식 감가상각·대손상각·제품보증비·퇴직급여충당금은 인식 못함 무상거래는 인식 안 됨 상환이자지급액은 지급시기에 비용으로 인식	미지급비용은 부채로, 미수수익은 자산으로 인식 선급비용은 자산으로, 선수수익은 부채로 인식 감가상각·대손상각·제품보증비·퇴직급여충당금은 비용으로 인식 무상거래는 이중거래로 인식(정부는 비용으로 인식) 상환이자지급액은 기간별 인식
특징	절차 간편, 회계 비용 저렴, 비목별 통제 용이 외형상 수지균형의 재정건전성(부채 규모 파악 안 됨) 재정상황의 총괄적 인식 곤란, 경영성과 파악 곤란 원가산정·비용편익분석, 거래오류 파악 곤란	절차 복잡, 회계 관련 비용 높음, 비목별 통제 곤란 실질적 재정건전성(부채 규모 파악) 재정상황의 총괄적 인식, 경영성과 파악 용이 원가산정·비용편익분석 용이, 거래오류 파악 용이
기장방식	주로 단식부기 활용, 복식부기도 가능	복식부기 활용, 단식부기 불가
정보활용원	개별자료 우선	통합자료 우선
추가정보요구	별도 작업 필요	기본 시스템에 존재
사용례	정부 예산회계, 가계부	정부 재무회계, 민간기업, 정부기업

- **미수수익** : 아직 못 받은 수익. 현금 유입이 없으므로 현금주의는 수입으로 인식 못함. 언젠가 받게 되므로 발생주의는 자산(채권)으로 인식.
- **미지급비용** : 아직 주지 않은 비용. 현금 유출이 없으므로 현금주의는 지출로 인식 못함. 언젠가 주어야 하므로 발생주의는 부채(채무)로 인식.
- **감가상각(減價償却)** :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산정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 실제 현금이 감소되지 않으므로 현금주의에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발생주의에서는 비용으로 인식.
- **대손상각(貸損償却)** : 대손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 대손상각은 대출업체의 부도나 다른 사유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채권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현금 유출이 없으므로 현금주의에서는 인식을 못하나 발생주의는 비용으로 인식.
- **제품보증비** : 판매한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 실제 현금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현금주의에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발생주의에서는 비용으로 인식.

- **퇴직급여충당금** :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期)의 손비(損費)로 처리하면 기간손익계산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퇴직금을 해당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 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 실제 현금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현금주의에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발생주의에서는 비용으로 인식.
- **이중거래** : 무상거래(예) 정부가 민간에게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지원)의 경우 현금주의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발생주의는 비용으로 인식함. 즉 정부는 무상거래를 비용으로 인식. 반면 무상지원을 받은 민간의 경우 현물은 국고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과과정(일단 임시수익으로 대변에 기록 ⇨ 자산평가 후 자산수증이익으로 대변에 기록)을 표기.

☞ **우리나라 국가 재무제표 예시**(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경우) - 계정식(차변·대변)이 아닌 보고식으로 작성

재정상태표	00기금 또는 00부처	
	20XY(당기)	20XX(전기)
자산		
I. 유동자산	XXX	XXX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XXX
2. 단기금융상품	XXX	XXX
3. ...	XXX	XXX
II. 투자자산	XXX	XXX
1. 장기금융상품	XXX	XXX
2. ...	XXX	XXX
III. 일반유형자산	XXX	XXX
1. 토지	XXX	XXX
2. 건물	XXX	XXX
3. ...	XXX	XXX
IV. 사회기반시설	XXX	XXX
1. 도로	XXX	XXX
2. 철도	XXX	XXX
3. 항만	XXX	XXX
4. ...	XXX	XXX
V. 무형자산	XXX	XXX
1. 산업재산권	XXX	XXX
2. 광업권	XXX	XXX
3. ...	XXX	XXX
VI. 기타 비유동자산	XXX	XXX
1. 장기미수채권	XXX	XXX
2. ...	XXX	XXX
자산 계	XXX	XXX
부채		
I. 유동부채	XXX	XXX
1. 단기국채	XXX	XXX
2. 단기공채	XXX	XXX
3. ...	XXX	XXX
II. 장기차입부채	XXX	XXX
1. 국채	XXX	XXX
2. 공채	XXX	XXX
3. ...	XXX	XXX
III. 장기충당부채	XXX	XXX
1.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XXX
2. 연금충당부채	XXX	XXX
3. ...	XXX	XXX
IV. 기타 비유동부채	XXX	XXX
1. 장기미지급금	XXX	XXX
2. ...	XXX	XXX
부채 계	XXX	XXX
순자산		
I. 기본순자산	XXX	XXX
II. 적립금 및 잉여금	XXX	XXX
III. 순자산조정	XXX	XXX
순자산 계	XXX	XXX
부채와 순자산 계	XXX	XXX

재정운영표	00기금 또는 00부처					
	20XY(당기)			20XX(전기)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XXX	(XXX)	XXX	XXX	(XXX)	XXX
1. 프로그램(A)	XXX	(XXX)	XXX	XXX	(XXX)	XXX
2. 프로그램(B)	XXX	(XXX)	XXX	XXX	(XXX)	XXX
II. 관리운영비			XXX			XXX
1. 인건비			XXX			XXX
2. 경비			XXX			XXX
III. 비배분비용			XXX			XXX
1. 자산처분손실			XXX			XXX
2. 기타비용			XXX			XXX
3. ...			XXX			XXX
IV. 비배분수익			XXX			XXX
1. 자산처분이익			XXX			XXX
2. 기타수익			XXX			XXX
3. ...			XXX			XXX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XXX			XXX
VI. 비교환수익 등			XXX			XXX
1. 부담금수익			XXX			XXX
2. 제재금수익			XXX			XXX
3. ...			XXX			XXX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XXX			XXX

순자산변동표	00기금 또는 00부처			
	기본 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	XXX	XXX	XXX	XXX
II. 재정운영결과		XXX		XXX
III. 재원의 조달·이전		XXX		XXX
1. 재원의 조달		XXX		XXX
(1) 국고수입		XXX		XXX
(2) 부담금수익		XXX		XXX
(3) 제재금수익		XXX		XXX
(4) ...		XXX		XXX
2. 재원의 이전		XXX		XXX
(1) 국고이전지출		XXX		XXX
(2) 무상이전지출		XXX		XXX
(3) 기타재원이전		XXX		XXX
IV.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납입자본의 증감	XXX	-	-	XXX
2. 투자증권평가손익	-	-	XXX	XXX
3. ...	XXX	XXX	XXX	XXX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XXX	XXX	XXX	XXX

13 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어야 한다.
 ㉢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해설

- ㉠ (○) 위원회조직은 다수가 결정에 참여하므로 책임한계가 불분명(책임의 분산)하여 책임전가, 책임의식 약화,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
 ㉡ (×) 행정위원회는 업무의 계속성·상시성을 요건으로 한다. 반면,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인 자문위원회의 경우 업무의 계속성·상시성은 설치요건이 아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다수의 참여와 조정·합의를 통한 결정을 하므로 독임제(단독제) 조직에 비해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 (○) •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 18부 5처 18청 6위원회** :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18부 5처 16청 +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된 2청 6위원회(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근거법률 명시)

•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아래 8개의 기관은 설치 근거가 정부조직법이 아님)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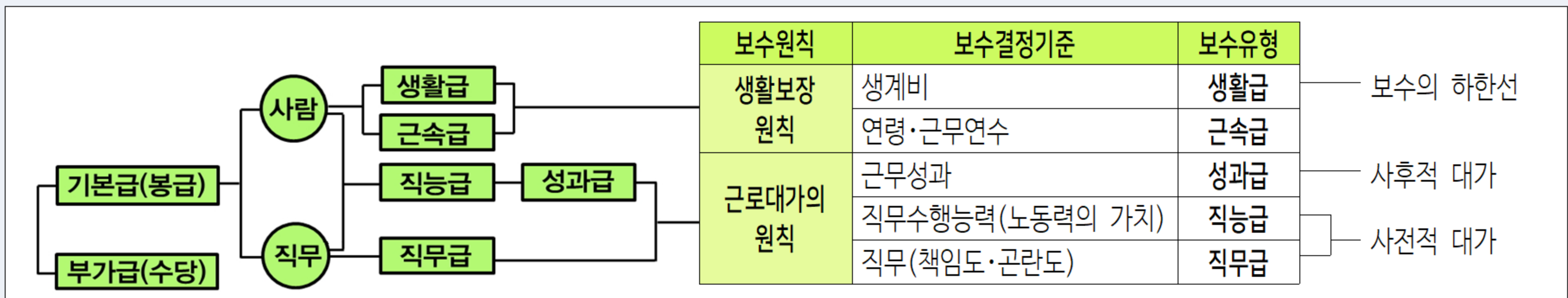
답 ④

14 공무원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능급은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보에 유리하다.
 ②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③ 직무급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가능하다.
 ④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하며 변동급의 성격을 가진다.

해설

- ② (×) 계급제·직업공무원제에서 강조되는 연공급(근속급)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적 능력이 아닌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문기술인력 확보가 곤란하다.



직무급	- 직무의 내용·곤란도(난이도)·책임도를 기준으로 한 보수. 직위가 지닌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수. -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직무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에 맞는 보수(job based pay.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를 통해 보수체계의 합리성(직무와 보수의 형평성)을 높임.	- 직무 중심 - 직위분류제·실적주의에서 중시
생계급 (생활급, 연령급)	- 공무원 및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의 필요에 대응하는 보수. - 지출과 상관성이 높은 공무원의 연령, 가족상황(가족 수, 자녀교육비)을 기준으로 하며 직무에 관한 요소가 반영되지 않음(모범적 고용주로서의 국가, 사회윤리적 요인 고려). 보수의 현실화와 적정화.	- 인간 중심 - 계급제·직업공무원제에서 중시

근속급 (연공급)	• 근속연수·경력·경험 등 속인적(屬人的) 요소의 차이에 따라 지급(호봉). 연장자를 우선하는 동양적 가치관과 관련됨. • 근무연수 증가에 따라 봉급이 증가하므로 근속을 장려하고 생계비 보장 기능도 하지만 정부 측의 인건비 부담 증가. • 폐쇄적 노동시장에서 일정한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유용한 제도이며 계급제·직업공무원제에서 강조.
성과급(능률·실적·업적급)	• 직무수행 성과(생산량, 현실적 공헌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사후적 보수. • 성과급은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집단의 성과도 반영해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점에서 개인 능력을 중심으로 하며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능력급과 다름.
직능급 (능력급)	① 직무수행능력(현재능력 및 잠재능력)에 초점(skill-based pay)을 두고 지급(노동력의 가치를 기준). * 능력급은 공무원이 조직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며 능력은 공무원이 가진 모든 능력이 아니라 조직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능력의 범위를 더욱 한정하여 직무별 능력을 기초로 하는 보수를 직능급이라 함. ② 일을 전제로 한 사람에 대한 보수 : 직무요소기준의 직무급(일에 대한 임금)과 인적요소기준의 근속급(사람에 대한 임금)의 혼합형태. 직무내용과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보수 결정, 근무성적평가를 활용. ③ 보수를 직무수행능력과 연계시키는 것은 개인에게 학습과 자기개발, 생산성 향상에 동기를 제공하는 효과를 지님.

답 ②

[관련기출]

1. 다음은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후보

① 실적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여 그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우대하는 보수체계이다.
②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른 직무의 가치를 보수와 연결시킨 것이다.
③연공급은 근속연수, 경력 등 속인적인 요소의 차이에 따라 보수의 격차를 두는 보수체계이다.
④생활급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내지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중심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2.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해경간부

① 실적급(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것이다.
②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③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해야 한다.

답 1. ① 2. ②

15 다음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가)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나) 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가) 300, (나) 100 ② (가) 300, (나) 200 ③ (가) 500, (나) 250 ④ (가) 500, (나) 300

해설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답 ④

[관련기출]

1. 우리나라 중앙예산부서의 재정관리 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회8급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지능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②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③ 예산 절감이나 국가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제공하는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④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7 서울9급

①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③ 토목사업은 400억 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관리 대상이다.
④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답 1. ② 2. ②

16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 및 검사
- ②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③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④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해설

②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2급이상)이 재산등록의무자이다.
③ (○) 경찰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은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이 재산등록의무자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을 추가시킬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경사 이상으로 재산등록의무자를 더 확대시켜 규정하고 있음.

☞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자

구분	재산등록의무자	재산공개의무자
정무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
일반직 별정직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포함)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최고 직무등급 고위공무원단 소속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포함)
	회계·조세·규제(인허가)·감사·수사 등 관련 부처의 5급~7급 공무원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특정직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과 직무등급 6등급 이상)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외무공무원(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와 가 등급 고위공무원단)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2급이상)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 학장 포함)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장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 학장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의 경찰공무원(시행령은 경사 이상)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시행령은 소방장 이상)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광역자치단체의 시·도경찰청장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공 기관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의 회장·상임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회장·상임감사
공직유관 단체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답 ②

[관련기출]

1.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 국회8급

- ① 품위 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 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 ③ 육군 소장과 강원도 소방정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가 있다.
- ④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50만원이다.
- 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경기도의 교육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2.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2011 전환특채(하)

- ① 지방의회의원 ②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③ 중령 이상의 장교 ④ 총경 이상의 경찰

3.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 경찰승진

- ① 준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②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③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④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3 국회8급

- ①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②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③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 ④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⑤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답 1. ⑤ 2. ③ 3. ① 4. ①

17 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 ① 경제적 규제 ② 바우처 ③ 조세지출 ④ 직접대출

해설

행정수단의 분류 - 강제성(coercion) 기준

… 살라몬(L. M. Salamon)

• 강제성

: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를 제한하는 정도.

직접성	정책수단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관리가능성	합법성, 정당성(정치적 지지)
높음	경제규제, 사회규제	높음	높음/낮음	높음	낮음	높음/낮음
중간	바우처, 공적 보험, 보조금, 공기업, 대출보증, 직접대출, 계약, 벌금[교정조세]	중간	높음	중간	중간	중간
낮음	불법행위 책임[손해책임법], 정보제공, 조세지출	낮음	중간	낮음	중간	높음

① 강제성이 높은 수단

: 강제로 이행하므로 정책효과가 큼(효과성 높음).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이 유효(형평성 높음). 이행강제 과정에서 이행사항 준수 여부의 지속적 감시·통제가 필요하므로 정부 인력과 예산 제약상 곤란(관리가능성 낮음). 타당성 있는 규제로 정책목표에 합의가 잘되고 규제가 잘 준수되면 능률성·정당성이 확보되나 잘못 도입된 규제는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효율성을 저해하며 국민의 반발로 인해 정당성 상실.

④ 강제성이 낮은 수단

: 강제로 이행시키지 않으므로 정책효과는 작고(효과성 낮음),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순응 확보가 가능해 정부가 감시·통제를 하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음(관리가능성 높음). 강제성이 낮으므로 정치적 반대는 적음(정당성, 정치적 지지 높음)

행정수단의 분류 - 직접성(directness) 기준

… 살라몬(L. M. Salamon)

• 직접성

: 공공활동을 허가하거나 재원을 조달하거나 개시한 주체가 그것을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정도.

직접성	정책수단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관리가능성	합법성, 정당성(정치적 지지)
높음	공적 보험, 직접대출, 정보제공, 공기업, 경제적 규제, 정부소비(직접시행)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
중간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낮음/중간	중간	낮음	낮음	높음
낮음	손해책임법[불법행위 책임],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기업, 바우처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답 ①

18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해설

② (×) 예산과 별도로 운영되는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완전성)의 예외이지만 예산에 포함된 특별회계는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가 아님.
특별회계와 기금은 단일성원칙과 통일성원칙의 예외이다.

④ (○) 국가재정법 상 사유 발생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의 변경이 가능하다.

•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비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설치사유	국가의 일반적 재정활동	① 특정사업 운영, ② 특정자금의 보유·운용, ③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을 재원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정부출연금·민간임의출연금·외부차입금·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재원
	무상급부 원칙 - 일반보상	유상급부(배제성) - 개별보상 가능	
수립 및 확정절차	부처의 예산요구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 편성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조정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통일성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통일성 원칙의 예외)	
완전성	정부 예산		예산 외로 운영(완전성의 예외)
집행상 재량성	집행과정에서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특별회계가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큼)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탄력성 보장
계획변경	이용(국회의결 필요), 전용 국가재정법정 사유에 해당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이하의 변경안은 국회 제출 불필요
결 산	감사원의 결산 검사, 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답 ②

2022년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15

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 주 3.5 ~ 4일 근무

- ① 재택근무형 ② 집약근무형 ③ 시차출퇴근형 ④ 근무시간선택형

해설

주 3.5 ~ 4일 근무는 집약근무형.

구분	주당 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	주당 근무일수	기타
시차출퇴근형	40시간	8시간	5일	출근시간 자율 조정
근무시간선택형	40시간	4~12시간	5일	
집약근무형	40시간	4~12시간	3.5일~4일	주5일 미만 근무
시간선택제전환근무제	15 ~ 35시간	최소 3시간 이상	5일 또는 격일제	전일근무제공무원의 신청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 유연근무제(변형근무제)

- 공직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근무유형을 정해 부서장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에 규정
-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높이는데 기여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상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주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간·근무시간· 근무일 자율 조정)	시차출퇴근형 (flex-time work)	1일 8시간 근무하되 출근시간 자율 조정 . 매일 같은 출근시간 또는 요일별 다른 출근 시간*주1)
	근무시간선택형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일 4~12시간 근무, 주5일 근무*주2)
	집약근무형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일 4~12시간 근무, 주3.5~4일 근무(1일 8시간 초과근무로 주5일 미만 근무)
	재량근무형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근무 인정.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용
원격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형 (at-home work)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 원칙적으로 초과근무 불인정(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지급 불가, 정액분은 지급 가능). 단, 예외적으로 긴급 초과근무 명령으로 초과근무 실적분 지급 가능
	스마트워크근무형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수행. 초과근무는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인정

* 주1) 기관·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설정된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해야 함이 원칙.

* 주2) 업무협조 등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설정된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에는 반드시 근무함이 원칙

☒ **시간선택제전환근무제(part-time work)** :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 동안 근무하던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여 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 ~ 35시간 근무, 주5일 또는 격일제 근무. 2020.10.20. 예규 개정으로 유연근무제 유형에서 제외됨

☒ 근무복장으로 **유연복장제**, 원격근무제로 **모바일근무형**(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 아닌 장소에서 근무)을 유연근무제로 추가하는 견해도 있음

☒ **집중근무시간제** : 업무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업무 외적인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밀도있게 일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로 업무 몰입을 높여 관행적인 초과근무를 줄임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가족친화 정책의 일환. 유연근무제에 추가하는 견해도 있음

답 ②

[관련기출]

1. 다음 내용 중 공공부문 유연근무제의 개념을 옳게 설명한 것의 개수는?

2018 서울경제9급

- ㉠ 재택근무제: 모바일 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 에서 근무
 ㉡ 원격근무제: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 탄력근무제: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하되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 선택적 근무시간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
 ㉤ 집약근무제: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주 5일 미만 근무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에 들어갈 B사무관의 근무 유형은?

2019 행정사

- △△과 A사무관 : ○○과쪄? 업무협의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B사무관님과 통화 하고 싶은데요?
 • ○○과 C주무관 : 네. B사무관님은 이번 달부터 10시에 출근하고 19시에 퇴근하십니다. 조금 후 10시 이후에 다시 전화바랍니다.
 • △△과 A사무관 : 아, 알겠습니다. B사무관님께서 ()를 신청하셨군요.

- ① 재택근무제 ② 집약근무제 ③ 시차출퇴근제 ④ 재량근무제 ⑤ 원격근무제

답 1. ② 2. ③

[관련기출] 공무원 A는 주5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나 그가 맡은 업무는 정형적이면서도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집에서 일할 수 없고 반드시 주5일 출근을 해야만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탄력근무 방식으로 묶인 것은?

2020 행정사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 시차출퇴근제 ㉢ 원격근무제 ㉣ 재량근무제 ㉤ 근무시간선택제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조건 : 정형적·보안유지·재택근무불가 / 주5일 근무 / 대중교통 접촉 최소화 시간대 출퇴근

㉠ (×) 시간선택제전환근무제가 비정형적 업무에 적합하다고 해설하시는 분도 있으나 모든 업무에 가능하며 인사혁신처 예규(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도 가능한 업무 예시로 다음 내용을 들고 있다.

• 시간선택제전환근무제 적용가능 업무(예시)

- 창구 및 유선 민원처리 등 정형화된 업무

- 24시간 근무부서의 업무(예 : 병원의 의사·간호사 등)

- 각종 교육기관 강의 업무(예 : 시간선택제 교사, 강사 등)

시간선택제전환근무제는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 ~ 35시간 근무하며 주5일 또는 격일제 근무. 따라서 제시된 조건에는 적합하다. 그러나 질문 내용이 가장 적합한 '탄력근무 방식'이며 탄력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제(flex-time work), 근무시간선택제(alternative work schedule), 집약근무형(compressed work), 재량근무제(discretionary work)이 있다. 시간선택제전환근무제나 원격근무제는 탄력근무방식이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다.

㉡ (○)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면서 출퇴근시간조절이 가능하므로 제시된 조건에 적합.

㉢ (×) 주5일 출근해야 하므로 원격근무제 불가. 또한 원격근무제는 탄력근무제에 속하지도 않는다.

㉣ (×) 주5일 출근해야 하고 정형적 업무이므로 출퇴근 의무가 없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 적용되는 재량근무제는 불가.

㉤ (○) 근무시간선택제는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일 4~12시간 근무하되 주5일 근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제시된 조건에 적합

답 ③

20 홀릿(Howlett)과 라메쉬(Ramesh)의 모형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제설정 주도자 \ 공중의 지지	높음	낮음
	높음	낮음
사회 행위자(societal actors)	(가)	(나)
국가(state)	(다)	(라)

① (가) -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의제에 이른다.

② (나) -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한다.

③ (다) -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 집행이 용이하다.

④ (라) - 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없다.

해설

④ (라) 동원형(Mobilization Model) - 정책결정자 정책의제설정을 주도하지만 대중의 지지가 낮은 상황이므로 정부의제화 후 행정PR이나 상징 등을 활용하여 대중적 지지를 높이려 한다.

■ 홀렛과 라메쉬(M. Howlett & M. Ramesh) 또는 메이(P. May)의 의제설정모형 - 논쟁의 주도자가 누구인지와, 대중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구분

		대중의 관여 정도(Nature of Public Involvement)	
		높음	낮음
논쟁의 주도자 (Initiator of Debate)	사회적 행위자 (Social Actors)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on) • 자유민주주의 국가 : 시민집단이 주도 • 민간집단에서 이슈가 제안되고 확산되어 먼저 공중의제가 되고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로 하여금 정부의제로 채택하게 함. •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 집행이 용이함.	내부주도형(Inside Initiation) •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 : 상당한 전문지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집단 또는 정부집단이 주도 •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하지만 공개적인 논의 확대나 정책경쟁을 바라지 않음
	정부 (state)	균화기형[공고화형](State Consolidation) • 국가유형과 관계없음. 정책결정자가 주도 •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 정책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를 시도해 정부의제와 공중의제로 동시에 설정됨.	동원형(Mobilization) • 일당제 국가 : 정책결정자가 주도 • 대중적 지지가 낮을 때 국가가 주도하여 정부의제화 후 행정PR이나 상징 등을 활용하여 대중적 지지를 높이려 함

답 ④

[관련기출]

1.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7급

①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에서 정부기관 내부의 집단 혹은 정책결정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은 공중의제화하는 것을 꺼린다.

② 동원형(mobilization model)에서는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부의제를 만든다.

③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정책의제 설정은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④ 공고화형(consolidation model)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한다.

2. 정책의제설정과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6 경찰간부
- ① 외부주도모형 : 민간집단에 의해 이슈가 제기되어 공중의제화한 이후 정책 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면 정부의제로 전환된다.
② 동원모형 : 정책결정자가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미리 결정한 후 이것을 일반대중에게 이해, 설득하는 활동을 한다.
③ 내부접근형 :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에 의해 정부의제가 채택되고, 정책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④ 균히기형 :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그 과정을 주도하여 해결을 시도한다.
3. 메이(P. May)는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와 대중의 관여 정도에 따라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네 가지 유형(A~D)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지방7급

대중의 관여 정도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	높음	낮음
민간	A	B
정부	C	D

- ① A는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먼(Hirs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② B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고 한다.
③ C에서는 이미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하여 정책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consolidation)를 추진한다.
④ D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의 역할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답 1. ④ 2. ③ 3. ②